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6호로 2023년 2월 9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11조): 필수노동자 → 필수업무 종사자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2.7.~2.12./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시행.2022.11.17.)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에서 현행 조례상의 “필수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